

부산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558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28.

판결 선고 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,
나. 1,472,904원 및 2024. 11. 6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95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,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현철

별지